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지원 및 기술·제품의 인증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대형가속기 관련 종합시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박사후연구원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심사제도 운영 및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전 기획점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민간 주요기반시설 대상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취약점 평가 기준 수립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28. ~ 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795”를 “799”로 하고, 일반직 계 “785”를 “78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54”를 “75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023”을 “1,024”로 하고, 일반직 계 “1,023”을 “1,02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21”을 “1,02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95</u>	<u>799</u>	+4
·	·	·	
·	·	·	
일반직 계	<u>785</u>	<u>789</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54</u>	<u>758</u>	+4
·	·	·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23</u>	<u>1,024</u>	+1
일반직 계	<u>1,023</u>	<u>1,024</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021</u>	<u>1,022</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49